

학교법인 분진학원 교직원 인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(분진중, 강원관광대학) 교직원 인사규정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고등교육법, 교육공무원법,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,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에 준하여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①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및 특별한 다른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② 제4조제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,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(신설 2015.06.29)

제 4 조 (교직원구분) ① “교원”이라 함은 중학교의 교사 및 대학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강사를 말하며, “직원”이라 함은 일반직 및 기술직, 기능직 및 기타 계약직을 말하고, 조교는 대학의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(개정 2012.06.15, 2019.08.30)

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 다만,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신설 2015.06.29)

제 5 조 (겸직금지) 교직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. 그러나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을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10.03.01)

제 2 장 교 원

제 6 조 (자격) ① 중학교 교원은 초·중등 교육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및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②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의 전공과목과 같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, 학기 당 발령을 원칙으로 한다.

(개정 2010.03.01)

제 7 조 (신규임용) ①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교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② 제6조의 자격자로 하되 박사학위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교수 이상의 신규임용은 제외한다.

③ 삭제 (개정 2012.06.15)

④ 전임교원임용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(개정 2010.03.01, 2012.08.30)

⑤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9.08.30)

제 7 조의 2 (특별채용) ① 본 대학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② 특별채용은 공개채용 등의 충분한 채용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며, 해당 채용분야에 부합하는 채용조건을 갖추고, 관련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. (신설 2016.08.30)

제 8 조 (채용방법) ① 중학교, 대학교원은 정관 제45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단,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및 강사는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.

(개정 2010.03.01, 2015.06.29, 2019.08.30)

제 9 조 (임용시기) 교직원의 임용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및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0 조 (임용기간) 대학교원 중 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기는 정관 제45조 제2항에 의하며,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한다.

(개정 2010.03.01, 2015.06.29)

①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 승진, 전직,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으로 정한다.

② 임용기간 중 병역복무, 해외유학,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

④ 강사의 임용기간은 정관 제45조제2항에 의하며,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,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.

(신설 2019.08.30)

제 11 조 (연구실적물의 범위)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신규 또는 승진, 재임용 임명할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.(개정 2012.06.15)

① 논문은 대학 또는 교수자격을 인정받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
1. 저서(출판물에 한함)

2. 학회지

3. 논문집

4. 정기간행물(학술 및 전문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)

5. 예·체능계에 있어서는 연구, 발표, 전시, 입선 등을 말한다.

제 12 조 (연구실적물의 인정) ① 저서 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만 연구 실적물로 인정한다.

② 중·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,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- ③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- ④ 예·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.

(개정 2010.03.01)

⑤ 전임교원으로 임용 후 재직 중 취득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 및 승진 등의 평가시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 (개정 2010.03.01, 2016.08.30)

⑥ 학술진흥법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보고서도 논문으로 인정한다.

⑦ 전공분야의 교수활동과 관련된 현장 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, 특허 취득 등 공인된 연구실적으로서의 가치가 인정 될 경우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연구실적심사) ① 대학의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그 중 2인을 타 대학 소속의 교원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0.03.01)

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.

④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%로 인정한다.

1. 1인 연구 또는 편찬	100% 인정
2. 2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	70% 인정
3. 3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	50% 인정
4.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	30% 인정
5. 석사학위 취득 논문	100% 인정
6. 박사학위 취득 논문	200% 인정

단,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2인(지도교수 포함)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는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간주한다.

⑤ 연구실적 심사평점기준은 A(4점), B(3점), C(2점), D(1점)로 하며,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 평균 "B(3점)"이상이어야 한다.

⑥ 예·체능계 실기(연기, 발표, 전시, 창작, 출품, 입상 등)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 기준은 따로 정하며,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%로 인정한다. 다만, 승진임용 시에는 당해 직명에서의 연구실적 이어야 한다.

⑦ 연구실적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의 2 (교수업적평가) 교수임용,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교수업적은 학문연구, 학생교육, 학생지도, 산학협력 등의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로 이에 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따로 둔다.(개정 2015.06.29)

제 14 조 (승진임용) ①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직급별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.
(개정 2012.06.15)

직 급	승진 최저소요연수	승진되는 직위
조 교 수	4 년	부 교 수
부 교 수	6 년	교 수

② 교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%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미달자는 승진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.

③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계산에는 휴직, 직위해제, 징계처분기간은 제외한다.

제 15 조 (승진의 요건)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따른다.

제 15 조의 2 (승진임용 제한) 해외유학 및 해외연수 등으로 휴직중인 전임교원은 복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승진임용 제청할 수 있다.

제 16 조 (평가위원)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따른 교수업적평가위원은 교학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(개정 2010.03.01, 2013.05.22, 2015.06.29)

제 17 조 (승진의 시기) 대학 교원 승진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.

제 18 조 (삭제)

제 19 조 (재임용) 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과 교수업적자료에 의해 우리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다.

②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%이상의 연구실적 있어야 하며 연구 실적 미달자는 재임용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.

제 19 조의 2 (재임용요건) ①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제45조 2항의 규정한 임용기간 외에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재임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(개정 2010.03.01)

② 심사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 19 조의 3 (재임용기간) ① 정년트랙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직명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(개정 2015.06.29)

1. 교 수 :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.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2. 부교수 :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3. 조교수 :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4. 삭제 (개정 2012.06.15)
5. 삭제 (개정 2012.06.15)
6. 강사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(신설 2019.08.30)

제 19 조의 4 (재임용시기)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, 9월 1일로 한다.

제 19 조의 5 (재임용여부통보 및 이의신청)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에 제청하며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그 사실을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.(개정 2010.03.01)

② 재임용 여부의 심사결과에 의해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.

④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20 조 (교원인사위원회 구성)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교학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6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보직자와 비보직자, 직급별, 계열별, 성별을 안배하여 임명한다.(개정 2010.03.01, 2013.05.22, 2015.06.29)

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(개정 2010.03.01, 2013.05.22, 2015.06.29)

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54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10.03.01)

제 20 조의 2 (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) 누구든지 신규임용, 승진, 재임용 및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진술, 기재증명, 채점 또는 보고를 허위로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였을 때에는 승진, 임용 및 기타 인사행위는 무효로 한다.

제 3 장 사 무 직 원

제 22 조 (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(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. 이하 “일반직원”이라 한다.)으로 임용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제 23 조 (신규채용) ① 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 또는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, 기타 경력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급을 정한다.

② 일반직원은 9급 1호봉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직무의 난이성, 책임정도에 따라 상위 직급에 임명 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일반직원 구분) ① 일반직원은 기술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군, 직계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한다.

② 기능직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한다.

③ 고용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.

제 25 조 (일반직 및 기능직의 계급구분) ① 일반직은 이를 4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능직은 7등급 내지 10등급으로 구분한다.

제 26 조 (승진시기) 일반직원의 승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1일, 9월 1일에 실시한다.(개정 2008.09.27)

제 27 조 (승진방법 및 소요년수) ① 직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점,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. 다만, 상위직 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6급 이하 일반직원의 승진임용은 직급별 최저 근무년수를 아래와 같이 소요해야 한다.

1. 일반직 및 기술직

직 급 별	소요년수	비 고
9급 - 8급	2 년	
8급 - 7급	3 년	
7급 - 6급	4 년	
6급 - 5급	5 년	

2. 기능직

직 급 별	소요년수	비 고
10급 - 9급	3 년	
9급 - 8급	4 년	
8급 - 7급	5 년	

② 전 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징계 및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28 조 (우수직원의 특별승진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 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.

1. 성실과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일반직원 귀감이 된 자,
2.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.
3.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.
4.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.

제 29 조 (보직관리의 원칙) ① 임용권자는 사무직원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사무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, 훈련, 근무경력,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휴직자,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)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,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시 근무자를 보충 할 수 있다.

제 31 조 (직무역량개발) ① 각급 학교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학식,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역량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.(개정 2013.05.22)

1. 관할청에서 실시하는 사무직원 연수
2. 교육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
3.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

②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예산을 고려해 직무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

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05.22)

③ 직무역량개발 성적은 인사관리 면에 반영한다.(개정 2013.05.22)

제 32 조 (강임) 임용권자는 직제 또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감등되어 과원이 된 때는 소속 사무직원을 강임 할 수 있다.

제 33 조 (당연퇴직) 일반직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 34 조 (직권면직)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
2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
3.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4. 직무수행능력 부족, 근무성적 불량, 근무태도 불성실, 품위 불량한 자

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35 조 (직위해제)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.
2.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.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.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

하여야 한다.

제 36 조 (인사교류) ① 임용권자는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각 급 학교 사무직원을 법인 내에서 전직, 전보 발령 할 수 있으며, 교류를 통한 사무능력 및 기능 업무에 능률을 꾀하여야 한다.

② 대학 내 인사이동은 행정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발령한다.(개정 2010.03.01)

제 37 조 (정년)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. 단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(개정 2010.10.22)

② 교원은 정년이 달한 날에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, 일반직은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③ 일반직의 정년은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.(개정 2016.12.28)

1. 5급 이상 일반직 60 세
2. 6급 이하 일반직 60 세
3. 기능직, 고용원 60 세

제 38 조 (경력환산)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경력환산율을 준용하되 조교 경력은 연금불입자는 100%, 그 외는 50%를 적용한다.

제 39 조 (정원)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분진중, 강원관광대학, 법인에 두는 일반직의 정원은 정관 별표 1, 2, 3과 같다.

제 40 조 (임시임용과 계약임용) ① 각급 기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.

② 각급 기관에서는 직원 정원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직종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임용 할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각 급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제 1,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각 급 기관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자격, 임용, 복무는 각각 정관 제90조, 91조, 92조를 따르도록 한다.

(개정 2010.03.01)

⑤ 임시임용 및 계약 임용 채용 계약서는 별지에 따르도록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교직원인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의 교직원인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 단, 개정규정 중 제14조(승진소요년수)의 적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